

전기공학과 대학원 내규

2024년 11월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과 대학원 학칙 제 2장 (입학) 제 7조(전형방법), 제 5장(자격시험) 제 22조(종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전기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 과정에 따른다.

제2장 학위 취득요건

제3조(석사학위 취득요건)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학생의 청구논문 발표 자료는 발표회 일주일 이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학원생은 국내외 논문지 또는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게재승인도 인정)하여야 한다.

제4조(박사학위 취득요건)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 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수료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이전까지 학위 청구논문과 관련한 주제의 논문을 SCI, SCIE 급 저명학술지 1편과 국내 또는 국제학술대회 1편 이상을 주저자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게재승인도 인정), 이 실적물 사본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발표에는 본인과 지도교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활동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 승인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연구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6조(보칙) 제 3조 2호와 제 4조 2호에서 규정한 학위취득 요건은 전기공학과 대학원 소속 일반전임교수 과반수이상의 합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입학전형

제7조(전형 및 평가 기준) 본교 일반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따르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 평가 및 면접고사를 병행한다.

2. 서류 평가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로 한다.
3. 면접고사는 전공에 대한 지식,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등으로 수행한다.
4. 서류 평가 및 면접고사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 양식으로 정리하여 지침서화한다.
5. 면접고사의 경우 고사장 또는 수험자의 상황에 따라 면접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종합시험

제8조(시험과목)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 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 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일반대학원 타 학과에서 수강한 과목은 1과목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로부터 수강한 과목은 2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제9조(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마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3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위원) 학과장은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학위 과정은 2인 이상, 박사학위 과정은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 방향, 문항별 배점, 평가 기준 등을 학과장과 협의하여 출제한다.

제12조(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 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 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 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3조(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제15조(시험결과관리) 학과장은 종합시험의 최종결과를 매 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합시험면제) 대학원 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준용)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